
 국토해양부 <small>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</small>	보 도 자 료		 <small>국토해양부</small>
	배포일시	2010. 4. 12(월) 총 2 매	
담당 부서	공공주택건설본부 기획총괄과	담당자	• 과 장 한창섭, 사무관 신영방 ☎ (02)2110-6273 sin7991@korea.kr
보 도 일 시		2010년 4월 13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거주 의무 도입

「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」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

- 국토해양부(장관 정종환)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」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4월 5일 공포·시행됨에 따라,
 -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(안)을 마련하여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으며,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
- 개정안은 5년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주택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정하였다.
 - 그 이유로는 수도권 GB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%~70% 수준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.

□ 또한, 개정법률에서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**9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** 하고 입주한 날부터 **5년간 계속하여 거주하도록 함에 따라**

○ 시행령에서는 입주예정자가 **해외체류, 이혼, 공·경매***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.

* 의무기간 중 근무·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때

* 의무기간 중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때

* 의무기간 중 국가·지자체,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입주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때

□ 이 밖에도, 개정안은 **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**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**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**하도록 그 **표시방법**을 정하였으며,

○ 입주자의 **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**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**입증자료***의 종류도 정하였다.

* 주민등록 등·초본, 국민연금 가입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

□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**금년 6월중 시행될 예정**이다.